

#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PROGRAM

## 대표이사 인사말

### 존경하는 GC녹십자웰빙 임직원 여러분!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경영을 위한 공정 경쟁, 윤리 경영, 준법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윤리적 기업 문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GC녹십자웰빙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CP는 GC녹십자웰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자 행동 규범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전 예방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윤리적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임직원은 명확한 공정거래 기준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준법 및 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반 사전 예방 및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한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GC녹십자웰빙은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라는 기업 사명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CP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과 공정거래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GC녹십자웰빙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윤리 경영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GC녹십자웰빙 대표이사 김 상 현

##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GC녹십자웰빙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용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 김상규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최근 CP는 단순한 법 위반 방지를 넘어 윤리적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GC녹십자웰빙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명확한 행동 원칙과 업무 지침을 따르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며,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 단순히 법을 위반하지 않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윤리적 경영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 CP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율준수관리자 및 전담부서에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의 업무가 아닌, GC녹십자웰빙의 모든 임직원이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이자 문화입니다. 공정거래 준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율준수관리자 및 전담부서는 여러분이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GC녹십자웰빙 자율준수관리자  
김 상 규

## GC녹십자웰빙은

모두의 행복한 내일을 약속하는  
개인맞춤형 영양 솔루션 기업을 지향합니다

### MISSION & VISION

####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

건강한 삶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행복을 느끼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인류가 육체의 건강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개인맞춤형 영양 솔루션 선도

인류 100세 시대, 모든 사람이 미리 내 몸 상태를 점검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자 사명입니다. GC녹십자웰빙은 개인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는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핵심가치

#### 창의도전 Challenge & Innovation



##### GC녹십자웰빙의 성장을 이끌어온 근본

GC녹십자의 위대한 도전이 오늘의 GC녹십자웰빙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쉬운길 보다 어렵더라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GC녹십자웰빙은 이제 까지의 명성과 신뢰가 지속 되도록 R&D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봉사배려 Care & Compassion



##### 희생과 봉사는 뿌리깊은 GC녹십자웰빙의 정신

수요가 적어 치료약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실천해 온 GC녹십자는 질병의 치료를 넘어 환우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정도투명 Transparency & Integrity



##### 올바름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GC녹십자는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언제나 바른 길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익보다 인류의 생명 존중을 먼저 생각하는 GC녹십자의 정신을 지켜 갑니다.

#### 인간존중 Respect & Dedication



#####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에서 시작됩니다

GC녹십자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뿐 아니라 GC녹십자의 성장과 함께하는 주주와 투자자 분들께도 더 큰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 Contents

|                                     |           |
|-------------------------------------|-----------|
| <b>CEO 인사말</b>                      | <b>01</b> |
| <b>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b>                  | <b>02</b> |
| <b>GC녹십자웰빙 MISSION &amp; VISION</b> | <b>03</b> |
| <br>                                |           |
| <b>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b>    | <b>07</b> |
| 자율준수편람의 의의                          | 07        |
| CP의 유용성                             | 08        |
| CP의 8대 도입 기준                        | 08        |
| CP등급평가제도                            | 09        |
| <br>                                |           |
| <b>제2장 GC녹십자웰빙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b>  | <b>10</b> |
| 당사 CP 주요 사항                         | 10        |
| 업무와 관련한 공정위 소관 법률                   | 12        |
| <br>                                |           |
| <b>제3장 공정거래법(경제력 집중의 억제)</b>        | <b>13</b> |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금지                    | 13        |
| 내부거래                                | 15        |
| <br>                                |           |
| <b>제4장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금지)</b>       | <b>18</b> |
| 개념                                  | 18        |
| 합의의 개념                              | 18        |
| 경쟁제한성                               | 19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류                        | 20        |
| 제재와 자진신고제도                          | 23        |
| <br>                                |           |
| <b>제5장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b>           | <b>25</b> |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25        |
| 거래거절                                | 26        |
| 차별적 취급                              | 28        |
| 경쟁사업자 배제                            | 30        |
| 부당한 고객유인                            | 31        |
| 거래강제                                | 33        |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34        |
| 사업활동 방해                             | 38        |
| 위반시 제재                              | 38        |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체크리스트                    | 39        |
|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40        |
| <br>                                |           |
| <b>제6장 하도급법</b>                     | <b>42</b> |
| 하도급법의 목적 및 특성                       | 42        |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하도급거래                  | 43        |
|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 43        |
|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 61        |
| 하도급법 준수 체크리스트                       | 63        |

|                                                |            |
|------------------------------------------------|------------|
| <b>제7장 표시광고법</b>                               | <b>66</b>  |
| 표시광고법의 목적 및 규제 이유                              | 66         |
| 적용 대상                                          | 66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67         |
| 법위반시 제재                                        | 70         |
| <b>제8장 제조물책임법</b>                              | <b>71</b>  |
| 제조물 책임의 요건                                     | 71         |
| 제조물 책임 인정시 책임                                  | 72         |
| 결함 등의 추정                                       | 72         |
| <b>제9장 약사법</b>                                 | <b>73</b>  |
| 약사법 개요                                         | 73         |
|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 73         |
| GC녹십자웰빙과 약사법 적용 가능한 리스크                        | 74         |
| 약사법 시행규칙                                       | 75         |
| <b>제10장 의료법 (제23조의 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b> | <b>77</b>  |
| 의료법 개요                                         | 77         |
| 법조항별 분석                                        | 77         |
| <b>제11장 청탁금지법</b>                              | <b>79</b>  |
| 법률적용 대상                                        | 79         |
| 부정청탁 금지                                        | 80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81         |
| 양벌규정(청탁금지법 제24조)                               | 82         |
| <b>제12장 공정경쟁규약(한국제약바이오협회)</b>                  | <b>83</b>  |
|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 83         |
| 공정경쟁규약의 의의                                     | 84         |
| <b>[부록]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크리스트</b>                    | <b>89</b>  |
| <b>[사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규정</b>            | <b>91</b>  |
| <b>[사규] CP규율 기준 (제재,포상)</b>                    | <b>100</b> |
| <b>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이력</b>                       | <b>102</b> |

# 1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1. 자율준수편람의 의의

#### 정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란 조직(민간, 공공 등을 포함)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라 함은 모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 소관 법률, 시행령, 고시 등 법규 전체를 의미한다.

#### 목적

- 이 “자율준수편람”은 당사자가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 조정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하며, 고객에게 신뢰를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CP의 유용성

- 조직이 CP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법위반으로 인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및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①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공정위 조사 및 법원 소송 대응 관련 비용 및 시정조치 등에 따른 과징금 비용 등 최소화)
- ②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기관 이미지 실추 예방
- ③ 공정위 CP등급평가 인센티브 (A등급 이상 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 ④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 3. CP의 8대 도입 기준

| 기 준                        | 내 용                                                                                            | 운영주체                     |
|----------------------------|------------------------------------------------------------------------------------------------|--------------------------|
| ①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CP담당부서                   |
|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 CP담당부서                   |
| ③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 CP담당부서                   |
| ④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 자율준수편람(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 | CP담당부서                   |
| 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최고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CP담당부서<br>(협조부서: HR)     |
|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                                             | CP담당부서<br>(협조부서: HR,재경팀) |
| ⑦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영                                                      | CP담당부서<br>(협조부서: HR,재경팀) |
|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선조치                                | CP담당부서                   |

## 4. CP등급평가제도

- CP등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이상 CP를 운영하고 등급평가를 희망하는 조직의 신청을 받아 매년 1회 신청 기관의 CP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CP 8대 기준(요건)을 CP의 구축, 확산, 운영, 평가라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평가한 후,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으로 등급을 평가한다.

### CP등급 평가 항목

| 평가차원                                | 평가항목                       |
|-------------------------------------|----------------------------|
| I. Construction (CP의 구축)            |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
|                                     |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 D1. 자율준수 편람                |
|                                     |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
| III. Operation (CP의 운영)             | O1. 사전감시 체계                |
|                                     |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 IV. Evaluation & Feedback (평가와 피드백) |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 CP등급 및 인센티브

\* 유효기간 2년

| CP등급* | 과징금 감경 | 직권조사 면제 | 공표명령 | 위원장 표창    |
|-------|--------|---------|------|-----------|
| AAA   | 최대 20% | 2년      | 면제   | 2년 연속 취득시 |
| AA    | 최대 10% | 1년 6개월  | 감경   | 2년 연속 취득시 |
| A     |        | 감경      | 감경   | -         |

# 2

## GC녹십자웰빙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1. 당사 CP 주요 사항

#### (1) 자율준수관리자

- 자율준수관리자는 당사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이사회가 임명
  - 대표이사 부재시 이를 대체하는 자가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
  - CP 담당부서가 공정거래 담당으로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

#### 자율준수관리자의 주요 업무

- ①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 개정
- ④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⑤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 ⑥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 ⑦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⑧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 ⑨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 계획에 반영

## (2) 자율준수편람

- 당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
- CP 담당부서는 조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시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한다.

## (3) 자율준수교육

-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관련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자율준수교육의 목적 및 시행

CP 관련 교육 이수 는 임직원의 의무이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CP 교육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CP운영의 필요성을 이해함에 있다.

- ① 교육 대상 계층, 부서, 업무 연관성에 따른 교육과정수립
- ②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 교육

## (4) 내부감시체계

- 당사는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5)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규범준수 장려 포상

#### 기 준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② 공정거래 교육이수 우수자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제안자
- ④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 관련 퀴즈 응모자 혹은 시험 응시 우수자
- ⑤ 기타 자율 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자

#### 포 상

- ① 상장, 포상 수여
- ② CP규정 위반 행위 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

## (6) 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CP 규정 위반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우리 조직의 임직원 규정(이하 “행동강령”으로 약칭) 및 징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
- 행동강령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각 장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업무와 관련한 공정위 소관 법률

### (1) 공정위 소관 법률

- 공정위 소관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13개 법률이 있다. (<http://www.ftc.go.kr>)

| 구 분          | 해당 법률                                                             |
|--------------|-------------------------------------------------------------------|
| 독과점규제 및 경쟁보호 | 공정거래법                                                             |
| 중소조직보호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 소비자보호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 (2) 공정위의 조직 특성 및 역할

- 공정위는 당초 경쟁당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나 그 이후 중소 조직보호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 공정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부서로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 처분을 위한 전 단계로서 강제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압수수색 권한은 없으며,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갖고 있음), 조사 후 처분을 위해 합의제 의결기구인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의 합의에 의해 처분 내용을 결정한다.

## 3



# 공정거래법

## 경제력 집중의 억제

###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금지

#### (1)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 시장지배적 사업이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판단기준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단,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공정거래법 제6조)
-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유형

##### • 가격남용행위(공정거래법 5조 1항 1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예시

비스킷 제조 3사가 제품의 용량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용량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

#### • 출고조절행위(공정거래법 5조 1항 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이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예시

대두유 제조사가 환율 급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일을 앞둔 10일전에 평소에 비해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 행위

#### • 사업활동방해행위(공정거래법 5조 1항 3호)

-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

#### • 진입제한행위(공정거래법 5조 1항 4호)

-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전제조건인 신규사업자나 기존사업자들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공정거래법 5조 1항 5호)

- 경쟁사업자 배제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거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예시

비료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0개의 비료회사와 전속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판매를 금지하여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 예시

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가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하여 소비자보다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

**(3) 제재**

|      |                                        |
|------|----------------------------------------|
| 시정조치 | 당해행위의 금지, 공표 명령 등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6% 범위 내 부과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 이내)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관련사례 A백신의 부당한 출고행위 조절의 건(2019년)**

-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이다. D사는 B사가 제조한 피내용 BCG 백신을, A사는 C사가 제조한 경피용 BCG 백신을 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형적인 복점 시장이며, A사의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간 50%를 상회하고 있음.
- 2015년 3월경 B사의 사정으로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A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C사의 피내용 백신을 다량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과정에서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A사는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점차 감소시키다가 아예 수입을 중단함.
- A사의 이와 같은 수입 중단으로 결국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중단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음. 같은 기간 경피용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여 A사는 독점적 이익을 실현함.
-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A사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함.

**2. 내부거래****(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금지 (법 제 45조 제1항 제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

**(2)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법 제 45조 제1항 제9호)**

- 부당하게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대가성 지원행위)
- 부당하게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규모성 지원행위)
- 직거래가 상당히 유리함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통행세 거래)

## 부당지원행위 유형

| 유형          | 내용                                                                                                                                                                                    |
|-------------|---------------------------------------------------------------------------------------------------------------------------------------------------------------------------------------|
| 자금지원        |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 자산, 상품 등 지원 |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 인력지원        |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 거래단계 추가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br>(1)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거나,<br>(2)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모두 제재대상이 된다. (단, 지원객체는 형사처벌은 제외)
-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 (규제적용 제외)
  - 해당연도 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자금거래, 자산거래, 부동산임대차, 인력제공
  -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지 또는 일반정상금리와 차이가 7% 미만인 경우
  -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연간 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법 제47조)

-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등과 아래 행위를 통해 동일인 및 그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이른바 ‘사익편취’ 금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 사업능력,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 (4) 부당성 판단기준

-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해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
  - 상생법에 따라 사전공개, 합리적, 비차별적 기준으로 수탁기업체 지원
  - 개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한 지원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 (5) 제재

|      |                                                                                                       |
|------|-------------------------------------------------------------------------------------------------------|
| 시정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공표 명령 등                                                                        |
| 과징금  |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10% 이내로서 위반액(지원/제공금액)에 부과기준을 20~160%를 곱하여 산정기준으로 함<br>(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관련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누38788 판결

-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금리를 책정한 사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함
  - 공정거래법상 정상금리는 지원객체의 차입금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금리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다름
  - 법인세법 저축 우려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금리를 산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인세법상의 산정기준에 불과하고, 법인세법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취지를 달리 하므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여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함

# 4



##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1. 개념

---

- 부당한 공동행위는 흔히 담합 또는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합의의 개념

---

- 법조문에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 협정과 같은 명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로든 의사  
의 일치가 있으면 합의로 인정된다. 심지어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러한 합의만으로 법위반은 성립되며, 실행 여부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  
을 주의하여야 한다.
- 합의의 추정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공동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  
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  
으로 추정한다.

-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②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③ 특정 조직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 조직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②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①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있는 경우
- ②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③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정보교환’을 담합의 유형에 추가하였다.

### 3. 경쟁제한성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은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 공급량, 시장분할에 대한 담합 및 입찰담합은 행위의 속성상 당연히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인정된다.(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담합을 경성카르텔이라고 부르며, 그 이외의 담합을 연성카르텔이라고 부른다)

|       |                                                          |
|-------|----------------------------------------------------------|
| 경성카르텔 | 가격협정, 공급제한협정, 시장분할협정, 입찰담합                               |
| 연성카르텔 | 거래조건협정, 투자조정(설비제한)협정, 상품의 종류·규격제한협정, 회사설립협정, 기타 사업활동방해협정 |

##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류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협정 등 9개 유형이 공정거래법에 열거되어 있으나 GC독십자웰빙과 가장 관련된 입찰담합,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유형유형을 추가 수록 하였다.

### (1) 가격협정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 (2) 공급제한협정

-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합의 유형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가격담합이거나 시장분할협정인 경우가 많음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경우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경우

### (3) 시장분할협정

-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 또는 고객집단(즉, 시장)을 나눠서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하는 행위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4) 입찰담합

-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행위
- 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의 하나로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분야다.
  - 공정거래법외에도 입찰담합은 형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규제하고 있고, 입찰 발주 기관에서도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 입찰담합의 유형

- |                       |                     |
|-----------------------|---------------------|
| ① 입찰가격담합              | ③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 ②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 선정) | ④ 수주물량 등의 결정        |

#### •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닌 행위

- 사업자가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 이전의 단계에서 제도상 정해진 발주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연락이나 조정 등이 없이, 자기의 입찰 참가에의 의욕, 기술 정보(유사 업무의 실적, 기술자의 내용, 해당발주 업무의 수행 계획 등)등을 발주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연락·조정 등을 하거나 요청 등을 받은 일 없이, 자기의 사업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입찰을 사퇴하는 것

## 제4장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관련사례 제약사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건 (2022년)

- 다국적 제약사 A사는 졸라텍스(항암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경, B사가 국내에서 2014년경부터 00텍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함. B사는 A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00텍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계약기간(2016. 10. ~ 2020. 12.) 동안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실행함.
- 이 사건 담합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B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합의이며, 이로 인해 복제약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됨. 또한,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공정거래법상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합계 26억 4,500만 원이 부과됨.

### 관련사례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담합 제재 건 (2011년)

- A사가 개발한 O프란(00세트론)은 대표적인 항구토제로 2000년 당시 국내 항구토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항구토제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음. B사는 1998년 A사의 제법과는 다른 00세트론 제법 특허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후, 복제약 O다론 제품을 시판하였음.
- 이후 양사 간 특허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A사와 B사는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B사가 O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 대신, A사는 B사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실제로 A사는 B사에게 O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XX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였음.
- 본건 합의는 양사가 서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되고, 경쟁 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함.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시장의 평균 약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합계 51억 원이 부과됨.

**관련사례** 백신구매 입찰담합 건(2023년)

- A사(백신 제조사)와 B사(백신 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가 확인됨.
-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제안 가격을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입찰 참여자들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접종사업 대상 백신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 등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사업자들의 행위는 각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됨.
- 입찰 담합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409억원)

## 5. 제재와 자진신고제도

### (1) 제재

|            |                                                                                                                                                                                                                                                        |
|------------|--------------------------------------------------------------------------------------------------------------------------------------------------------------------------------------------------------------------------------------------------------|
| 행정적 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li> <li>•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내에서 부과</li> </ul>                                                                                                                  |
| 형사적 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li> <li>•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li> </ul>                              |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는 아니지만, 담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의 하나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공공기관 발주 건에 대해 입찰참가자 간의 담합은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li> <li>•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무과실책임과 손해배상액 예정제도(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법관이 명할 수 있는 제도)의 특칙이 있다.</li> </ul> |

### (2) 자진신고제도

- 자진신고제도 또는 리니언시(LIENIENCY)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조직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
  - 첫 번째 자진신고자(1순위)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두 번째 신고자(2순위)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다.

## 제4장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 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제출한다.

## 공정위자진신고 감면신청 접수처

|         |                                 |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카르텔총괄과 |
| 전 자 우 편 | Leniency@korea.kr               |
| 팩 스     | 044-200-4444                    |
| 문 의 처   | 카르텔총괄과 044-200-4535             |

## 5



# 공정거래법

## 불공정거래행위

###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                |
|---------|----------|-----------------------------|---------------------|----------------|
| 제1호     | 거래거절     | • 공동의 거래거절                  | • 기타의 거래거절          |                |
|         | 차별적 취급   | • 가격차별<br>• 집단적 차별          | • 거래조건차별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 제2호     | 경쟁사업자 배제 | • 부당염매                      | • 부당고가매입            |                |
| 제3호     | 부당한 고객유인 |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         | 거래강제     | • 끼워팔기                      | • 사원판매              | • 기타의 거래강제     |
| 제4호     | 거래상 지위남용 | • 구입강제<br>• 불이익 제공          | • 이익제공 강요<br>• 경영간섭 | • 판매목표 강제      |
| 제5호     | 구속조건부거래  | • 배타조건부거래                   | •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                |
| 제6호     | 사업활동 방해  | • 기술의 부당이용<br>• 기타 사업활동 방해  |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 거래처 이전 방해    |
| 제7호     | 부당한 지원행위 | • 부당한 자금지원<br>•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 부당한 자산·상품지원       | • 부당한 인력지원     |

- 아래 내용은 공정위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 2. 거래거절

### (1)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거절이 금지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공동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여부를 위주로 판단. ‘관련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함.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와의 거래개시 또는 계속이 제한되므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봄.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거래거절이 합리적인 경우
- ☑ 거래거절이 있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고 미달 사업자와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 효율성 증대효과가 큰 경우

### (2)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시행령 별표1)
- 대상행위
  -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임. 따라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 • 위법성의 판단기준

-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③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 ④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③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④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자기의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관련사례

##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6080 판결)

## 사실관계

-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시장에서 B사를 포함한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최근 5년 기준 83%이고, 나머지 20여개 군소 제약사들이 상위3개사의 특허가 만료된 0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상위 3사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시키고 개별 동물약국이나 대한약사회의 공급요청에도 불구하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게 공급하지 않았음. 공정위는 거래거절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부당한 거래거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사가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거절을 하여야 하나, 본건에서 B사는 ‘특정사업자’가 아닌 ‘특정 유형의 사업자’ 모두에게 거래거절을 하였으므로 이는 거래거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B사가 거래를 거절한 의약품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의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이라거나 B사의 행위로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의 사업 활동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사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3. 차별적 취급

## (1) 가격차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이 된다.

##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차별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현저히 제한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 • 가격차별을 하여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2) 거래조건차별

-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외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3) 집단적 차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취급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 4. 경쟁사업자 배제

### (1) 부당염매

-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위법성 판단기준
  - 염매행위가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 (2) 부당고가매입

-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로, 통상 거래가격이란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의미한다.

###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 ☑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5. 부당한 고객유인

###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로, 이익 제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 물의 지급, 부과되어야 할 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도 포함된다.

### • 위법성 판단기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출판사가 자사의 서적을 교재로 소개 또는 추천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

## 관련사례

## 부당한 이익제공에 의한 고객유인 사례 ①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3-172호. 2023.11.7)

## 사실관계

- J 제약사는 제조 또는 공급하는 62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판매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현금 및 물품지원, 식사 및 향응 등 제공, 골프 접대, 병원 행사 경비 및 외국 등 외국 등 지원, 심포지엄 개최 등 지원, 학회 지원,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를 통한 지원 등 70억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

## 공정위 판단

-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한 기준이 됨. 피심인이 본사 차원에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한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 및 의료인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점에 비추어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00억원 부과(해당기간 매출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

## 관련사례

## 부당한 이익제공에 의한 고객유인 사례 ②

(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4-007호. 2024.1.5.)

## 사실관계

- A약은 '15년 8월경부터 '20년 7월경까지 주로 전북지역 중심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의 의사 및 약사에게 자기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판매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

## 공정위 판단

-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사 차원에서 병의원 등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현금 등을 제공하는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의약품의 처방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3억원)을 부과

##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 위법성 판단기준

-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상품)
-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거래강제****(1) 끼워팔기**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임대도 포함)

**• 위법성 판단기준**

-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 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
-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인기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2) 사원판매**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7. 거래상 지위의 남용****(1) 금지 이유**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당사 입장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민사문제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거래상 지위의 존재를 전제로 금지행위 유형을 주의하여야 한다.

## (2) 행위유형

### • 개설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의 하나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세부 유형으로서 거래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5개 유형이 존재한다.

### •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 • 불이익제공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 불이익 제공

-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 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성 거래거절)

## 관련사례

## K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13. 5. 16. 의결 제2013-098호)

## 사실관계

- 영업실적이 저조한 도매점 및 도매점 협의회 참석을 지속한 도매점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해지(해지 전 공급물량 감소 포함), 도매점과 판매목표 강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목표 미달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

## 공정위 판단

- 도매점 협의회 참석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은 부당, 영업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을 조기 퇴출시킬 목적으로 피심인이 해당 대리점의 영업구역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계약 해지는 부당.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계약해지 등의 수단으로 강제한 것은 부당함.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 부과

## • 경영간섭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 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 관련사례

A시설공단의 철도시설 설계, 시공 및 용역과정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의결 제2016-022호. 2016.1.22)

## 사실관계

-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간접비 및 경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함
- 철도시설 설계·시공 일괄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
-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대납하도록 요구

## 공정위 판단

-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 등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한 거래상대방에 입장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인데도, A시설공단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시공사로부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하였음
- A시설공단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임
- 발주자인 A시설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납부하도록 전가한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2,000,000원 부과

## 8. 사업활동 방해

- 사업활동 방해는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천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처 이전 방해) 및 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등 4가지 세부 유형이 있다.

## 9. 위반시 제재

|      |                               |
|------|-------------------------------|
| 시정조치 | 행위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4% 범위 이내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체크리스트

| 법 위반사항   | 점검사항                                                                                                                                                                                                                                                                                                                                                     |
|----------|----------------------------------------------------------------------------------------------------------------------------------------------------------------------------------------------------------------------------------------------------------------------------------------------------------------------------------------------------------|
| 부당한거래거절  |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가?                                                                                                                                                                                                                                                                                        |
|          |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지는 않는가?                                                                                                                                                                                                                                                        |
| 가격 차별    | 거래가격의 격차설정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거래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가?                                                                                                                                                                                                                                                                                              |
| 거래조건 차별  |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가?                                                                                                                                                                                                                                                                                    |
| 불이익 제공   | 거래상대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는가?                                                                                                                                                                                                                                                                                       |
|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가?                                                                                                                                                                                                                                                                                                  |
|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가?                                                                                                                                                                                                                                                                                                         |
|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
|          |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가?                                                                                                                                                                                                                                                                                                                    |
|          | 협력업체나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가?                                                                                                                                                                                                                                                                                                     |
| 경영간섭     |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GC독심자웰빙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가?                                                                                                                                                                                                                                                                       |
|          | 거래상대방 직원의 부적격성을 결정하는가?                                                                                                                                                                                                                                                                                                                                   |
| 거래상 지위남용 |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가?                                                                                                                                                                                                                                                                                            |
|          |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GC독심자웰빙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는가?                                                                                                                                                                                                                                                                                                    |
|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지는 않는가?                                                                                                                                                                                                                                                                                                                   |
| 계약서 작성   | <p>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 등을 제한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 있는지</li> <li>-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li> <li>-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GC독심자웰빙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li> <li>-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li> </ul> |

##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1. 개요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부서의 하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 전원회의와 소회의

| 전원회의  |                                                                                                                                                                                                                                   | 소회의                                                                                                                                                                                                                                                                              |
|-------|-----------------------------------------------------------------------------------------------------------------------------------------------------------------------------------------------------------------------------------|----------------------------------------------------------------------------------------------------------------------------------------------------------------------------------------------------------------------------------------------------------------------------------|
| 의장    | 위원장                                                                                                                                                                                                                               | 상임위원(주심위원)                                                                                                                                                                                                                                                                       |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
| 소관사항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규등 의제·개정<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의신청의 재결<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br><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br>(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사건<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인정·인가사항<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행정지의 결정<br><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태료<br><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br>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

#### 용어해설

|     |                                                                                                                                                                                            |
|-----|--------------------------------------------------------------------------------------------------------------------------------------------------------------------------------------------|
| 심결  | 공정위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                                                                                                                                                        |
| 심사관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심사관은 공정위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된다. |
| 피심인 |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 사건의 개시

-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의해 사건이 개시된다.
- 신고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직권인지는 익명의 신고, 언론의 기사, 기타 신고 외의 방법에 의해 공정위가 법위반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 사건의 심사

-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관이 심사하는 단계
- 현장조사, 자료제출명령 등 강제조사권은 부여되어 있으나 압수 및 수색 권한은 없다.
- 심사결과 법위반으로 판단되면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의 심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구함

### 심의 및 의결

- 사안에 따라 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가 개최되어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된다.
- 전원회의는 다수결로, 소회의는 만장일치로 의결
- 의결은 무혐의, 경고, 시정조치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 불복절차

- 공정위 의결로 처분을 받은 피심인은 공정위에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또는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6



## 하도급법

###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특성

#### (1) 목적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하도급법의 주된 목적이다.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협력사)가 대등한 지위라면 체결하였을 거래내용을 의미한다.

#### (2) 특성

- 하도급법은 당초 출발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이라는 점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합의에 이르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 업무상 유의사항

하도급거래관계에 있어서 '합의' 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하며, 비록 하도급거래관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래상 지위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2.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 3.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 사 항        | 내 용                                                                                                                                                                       |                                                                                                                                                      |
|------------|---------------------------------------------------------------------------------------------------------------------------------------------------------------------------|------------------------------------------------------------------------------------------------------------------------------------------------------|
| 원사업자 의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교부, 서류보존</li> <li>내국신용장 개설</li> <li>하도급대금 지급</li> <li>관세 등 환급액 지급</li> <li>공급원가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급금 지급</li> <li>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li> <li>하도급대금지급보증</li> <li>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li> </ul>              |
| 원사업자 금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특약 설정</li> <li>물품 등의 구매강제</li> <li>부당반품</li> <li>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li> <li>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li> <li>부당한 경영간섭</li> <li>탈법행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li> <li>부당한 위탁취소</li> <li>감액금지</li> <li>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li> <li>부당한 대물지급</li> <li>보복조치</li> </ul> |
| 발주자 의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li> </ul>                                                                                                            |                                                                                                                                                      |
|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보존</li> <li>신의성실의 원칙준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사업자 위법행위 협조거부</li> </ul>                                                                                     |

## (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 1)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이해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7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법정기재사항

-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시 제외)
-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사전 서면발급의무 예외

- ☑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위탁시점에 의무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함

### • 서면발급의무 추정제도

-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통지로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

## 보존대상 하도급거래 관련 자료

| 보존대상 |                                                                                                        | 근거           |
|------|--------------------------------------------------------------------------------------------------------|--------------|
| 1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 법 3조 1항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법 3조 6항      |
|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법 8조 2항      |
| 4    | 검사결과 통지서                                                                                               | 법 9조 2항      |
| 5    | 감액 서면                                                                                                  | 법 11조 3항     |
|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법 12조의3 2항   |
| 7    | 계약변경(변동) 내역 통지서                                                                                        | 법 16조 2항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6조 1항 2호 |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br>(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                                          | 시행령 6조 1항 3호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으로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br>⇒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6조 1항 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6조 1항 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br>⇒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6조 1항 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br>⇒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6조 1항 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 시행령 6조 1항 8호 |
| 15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관련 서류                                                                | 시행령 6조 1항 7호 |

##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
- 이 규정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흔히 ‘갑질’로 표현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 부당한 특약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

-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대표적인 범위반 유형

- 계약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예: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발생한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업무상 유의사항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 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 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함

## 관련사례

##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판단되어 조치된 사례

(A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의결 제99-47호, 1999.4.13.)

## 사실관계

- A공사(현재 B주택공사)는 '97.3.14일자로 용지규정시행세칙 제73조제2항에 환매특약 등기 및 그 변경·말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한다고 개정하여 해당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에도('97년 750백만 원, '98년 647백만 원) 불구하고, 여전히 각 지사에서 사용하는 용지매매계약서 상에는 환매특약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중 일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매수인이 환매특약 설정 및 말소등기 시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

## 공정위 판단

-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A공사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됨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272백만 원 부과)

## 3) 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100)을 해야 함

####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대표적인 법위반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
-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 (법 제4조 제2항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 (법 제4조 제2항 제3호)
-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 (법 제4조 제2항 제4호). 예컨대, 수급사업자에게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법 제4조 제2항 제5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적용(법 제4조 제2항 제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법 제4조 제2항 제7호)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조 제2항 제8호)

##### 업무상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 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 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함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 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 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의 산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가져야 함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도록 함

## 관련사례

**다른 부문의 단가 인상을 약속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14296판결)

## 사실관계

- A자동차는 34개 수급사업자에게 0렌토 등 다른 차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하고, 0오 등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하(0.9%~29.9%)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 사업자들이 25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함

## 법원의 판단

- A자동차는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관하여 내부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하된 납품 대금을 전액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 한 것으로 판단

## 관련사례

**일률적 단가 인하 사례 (0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4부사0457)**

## 사실관계

- 0스텍은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 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며, 2011년 1월경에도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요청을 받아,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

## 공정위 판단

- 0스텍과 발주자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 및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

## 관련사례

**예가 초과를 이유로 최저입찰가를 재협상한 사례**  
(A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의결 제 2008호-233호))

## 사실관계

- A엔지니어링은 2006년 “전남 영암 B중공업 도장 SHELTER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등 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예가내 최저 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고 현장설명을 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예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공정위 판단

- A엔지니어링의 하도급 관리 규정에 “입찰실시 전에 예가를 확정하여 밀봉하여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견과 관련하여 예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인정됨

## (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 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록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에 해당한다.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3배)의 대상이 됨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함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관련사례** (주)00바이오의 부당한 위탁취소의 건**사실관계**

- (주)00바이오는 코로나19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획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함
- 이 과정에서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함
- 그리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자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 기일 및 납품 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여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함.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함

**결과**

- 시정명령 부과. 단, (주)00바이오가 심의일 전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손해액 등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2) 부당반품의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당반품의 유형**

- ☑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 장소 부족·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
- 클레임 약정서를 사전에 교부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 결과를 같이 통보할 것

## 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의무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하며,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검사결과의 통지 의무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I)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II)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 검사비용문제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업무상 유의사항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 자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함

## 관련사례

**검사결과 미통지 후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 사례**  
**(A인터내셔널의 불공정 거래건, 2014 서제2223)**

## 사실관계

- A인터내셔널은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 공정위 판단

- 원사업자인 A인터내셔널이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고,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 또한, 목적물 수령 후 물품 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4)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일체의 감액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판단된다.

## • 감액금지 위반 유형

|                                |                                                                                                                         |
|--------------------------------|-------------------------------------------------------------------------------------------------------------------------|
| ① 소급단가 적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다.                                                            |
|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 ④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A사는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한 사례 |
| ⑤ 원사업자가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강제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 ⑥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적용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인하를 이유로 한 감액     |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

## 업무상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검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한 후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 가능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 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검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한 후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 가능

## 관련사례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 (A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고발요청 건, 2015부사1907)

## 사실관계

- A이엔지는 2012. 1월부터 2013. 6월까지 수급사업자 B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I)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II)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III) 자신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6,500천 원을 감액

## 공정위 판단

- 중소조직청장은, A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197,000천원의 피해를 입었고, A이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였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여 고발조치

##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에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의미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음. 단,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정 기재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기술자료요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는 체결 후 7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술자료요구서 법정기재사항

- ☒ 기술자료 제공 및 요구 목적
-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비밀유지계약서 법정기재사항

-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 위반에 따른 배상
- ☒ 기술자료의 반환, 폐기방법 및 일자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

### •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함(법 제35조 제1항)
-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함(법 제35조 제2항)

#### 관련사례

#### 금형제작 상세 도면 요구 사례 (A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3제하3664)

##### 사실관계

- A하우시스는 2003년부터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았으나,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

##### 공정위 판단

- A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음

### 6)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8조). 경영간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전속거래강요행위금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
-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
-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
-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

## 금지행위의 예시

-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 게만 납품토록 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 관련사례

## 재하도급거래 관련 부당한 경영간섭 사례

(A웨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08하개2356, 제 2009-032호)

## 사실관계

- B전자(주) 등 2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 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

## 공정위 판단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거래 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 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써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됨

## 관련사례

## 부당한 경영간섭 판례 (대법원 2011.10.13. 선고2010주8522판결)

## 사실관계

- A전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승인원(SPECIFICATION SHEET)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승인원에는 회로도, 부품의 종류와 구체적 기능, 동작원리뿐 아니라 원자재 구매처 및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조립방법까지 기재토록 하였으며, 또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 담당 인력을 선정하게 하고 위 인력으로 하여금 2차 벤더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법원 판단

- “품질 유지 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내용을 간섭한 행위로 보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

## (3)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 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금 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금 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목적물 인수일은 정산시점에 불구하고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을 목적물 인수일로 본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이 결제 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 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관련사례

**민원보상비와 지체상금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 사실관계

- A는 C공사 중 일부를 B에게 건설위탁하였고 B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공사도중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근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비가 들었고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위 보상비와 지체상금 등을 합한 액수가 하도급대금을 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법원 판단

-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위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음

## 2) 선금금 지급 의무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선금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지급 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이 적용된다.

##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함
-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4)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됨

- ☑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
-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 협의 가능

#### 6) 하도급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연동 예외 사유

-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소액(1억원 이하) 계약인 경우
- ☑ 단기(90일 이내) 계약인 경우      ☑ 양 당사자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함)

#### (4) 기타 금지행위

##### 1)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하도급법 제12조의2)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정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 (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

##### 관련사례

##### A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 (2019년)

##### 사실관계

- A사는 B사로부터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을 함.
-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후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음
- 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B사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함. A사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으로 다수 기업으로부터 IT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수주한 사업 중 일부를 중소IT업체에게 하도급주고 있음. 수급사업자로서는 A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A사가 부담할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 결과

-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A사대신 지급한 원금을 반환하고 향후 재발방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함

##### 2) 보복조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의무사항

### 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상 발생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을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때 (수급사업자의 요청 불요)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관련사례

#### A광역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의 건 (의결 2005-06)

##### 사실관계

- A광역시는 여성의 광장 건립공사 중 공연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체결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동의서도 함께 접수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잔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 공정위 판단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 인천광역시의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4.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 (1) 행정적 제재

|      |                                                                      |
|------|----------------------------------------------------------------------|
| 시정조치 | 하도급대금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부당특약의 삭제 또는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 과징금  | 관련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부과                                                 |

### (2) 형사적 제재

-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
-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하도급법 위반으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증명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된다.
- 하도급법은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금지,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관련하여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손해액의 3배~5배(기술유용의 경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하도급법 준수 체크리스트

| 항목                                                  | 점검사항                                                                  |
|-----------------------------------------------------|-----------------------------------------------------------------------|
| <b>입찰공고</b><br><br>하도급법 제4조<br>(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
|                                                     |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
|                                                     | 경쟁입찰로 선정 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
|                                                     |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
| <b>발주 및 계약</b><br><br>하도급법 제3조<br>(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
|                                                     | 계약서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았는가?                                                |
|                                                     | 약서에 하도급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
|                                                     | 계약서의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법무팀 또는 재무관리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                                                     |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서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였는가?     |
| <b>특약 검토</b><br><br>하도급법 제3조의 4<br>(부당한 특약의 금지)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
|                                                     | 특약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
|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이 있는가?                            |
|                                                     |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
|                                                     |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 하였는가?      |
| <b>대금 결정</b><br><br>하도급법 제4조<br>(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                                                     |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 제6장

## 하도급법

| 항목                                                       | 점검사항                                                                                                                                                                                                                      |
|----------------------------------------------------------|---------------------------------------------------------------------------------------------------------------------------------------------------------------------------------------------------------------------------|
| <b>대금 결정</b><br><br>하도급법 제4조<br>(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수의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 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가?<br><br>수의계약 시 불합리한 사유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 <b>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b><br><br>하도급법 제8조<br>(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br><br>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br><br>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한 적이 있는가?<br><br>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 (1개월)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
| <b>부당반품</b><br><br>하도급법 제10조<br>(부당반품의 금지)               | 당사가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 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br><br>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br><br>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                               |
| <b>검사</b><br><br>하도급법 제9조<br>(검사의 기준 방법 시기)              |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가?<br><br>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 방법 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였는가?<br><br>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 하였는가?<br><br>물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 <b>하도급대금감액</b><br><br>하도급법 제11조<br>(감액금지)                |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br><br>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 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br><br>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 인하사유와 기준을 해당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  |
| <b>대금지급</b><br>하도급법 제13조<br>(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여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                                                                                                                                                                   |

| 항목                                                                                   | 점검사항                                                                                                                                                                                                                                                                              |
|--------------------------------------------------------------------------------------|-----------------------------------------------------------------------------------------------------------------------------------------------------------------------------------------------------------------------------------------------------------------------------------|
| <b>하도급대금의 조정</b><br><br>하도급법 제16조의2<br>(원재료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경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                                                                                                                                                                                                                            |
| <b>기술자료 요구</b><br><br>하도급법 제12조의3<br>(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br><br>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 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는가?<br><br>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가?<br><br>세부적인 원가자료 요구 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br><br>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는가?<br><br>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다른 협력업체에 제공하였는가? |
| <b>경영간섭 및 보복조치</b><br><br>하도급법 제18조<br>(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br><br>하도급법 제19조<br>(보복조치의 금지)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였는가?<br><br>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였는가?                                                                                                                                    |

## 7



# 표시광고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1. 표시광고법의 목적 및 규제 이유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사업자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를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거짓·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고 구매선택을 왜곡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2. 적용 대상

- 표시란, 사업자가 상품 등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 등의 용기, 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포장을 말한다.
-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PC통신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다양한 표시 외에 다양한 홍보물, 팸플릿 등 각종 광고물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인 적용되므로 업무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유형              | 내용                                                                                                                | 조항       |
|-----------------|-------------------------------------------------------------------------------------------------------------------|----------|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3조 1항 1호 |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3조 1항 2호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3조 1항 3호 |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3조 1항 4호 |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 실제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 기타 식용유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참기름”이라고 표시·광고한 경우
- 실제는 50%가 실크이고 50%는 레이온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 또는 “실크”라고 표시·광고한 경우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 등에 영어 일본어 등으로 표시하여 마치 미국산 또는 일본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 관련사례

#### 반려동물 사료 방부제 표시 관련 건 (2023년)

##### 내 용

- 6개 반려동물 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된 사료를 판매하면서 펫사료에 ‘무방부제’ ‘10FREE’, ‘방부제 무첨가’ 등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특정 성분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된 것으로 판단한다.

##### 결 과

-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기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 제7장

표시광고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관련사례 가슴기 살균제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제재 건 (2022년)

#### 내 용

- A산업(주) 등 3개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슴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과장하여 광고

#### 결 과

-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과징금(1.1억원) 부과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 관련사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 표시 관련 건 (2020년)

#### 내 용

-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 식품 분석 센터 사이토 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이라고 표시한 상품에 대해 공기중에서 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입증된 바 없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거짓·과장되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시켰다고 판단

#### 결 과

- 시정명령 및 과징금(100만원) 부과

## (2)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 제조자·판매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제품·용역의 품질·종류·수량·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은폐 또는 누락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축소

### 관련사례 00톡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건 (2023년)

#### 내 용

- 00톡스는 자사 보톡스 제품을 광고하면서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독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함
- 00톡스는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 서열 분석 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 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음에도 염기 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비방적인 광고를 함

#### 결 과

- 시정명령 및 과징금(2,100만원) 부과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처리 여부가 객관적으로 맥주맛의 우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자기의 비열처리 맥주가 경쟁사업자의 열처리 맥주에 비하여 맛의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목을 시험한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몇가지 항목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평균치를 구하거나 그래프로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초 시험결과를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 (4)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행한 표시·광고

#### 관련사례

#### 경제적 대가 은폐한 블로그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제재 (2014년)

##### 사실관계

- 00코리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한 뒤 파워블로거들에게 자신의 자동차 제품과 자신이 후원하는 공연에 대한 광고를 블로그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

#####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각 블로그의 광고 게시물에 피심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블로그 운영자들이 피심인과 상관없이 독자적 또는 자발적으로 광고한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함

#### 업무상 유의사항

- 명백하거나 객관적이 근거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될 수 있어 유의 필요
- 구체적인 수치로 성능을 강조할 경우, 객관적인 실험/ 연구 결과로 증빙되어야 함
- 인플루언서, 전문가 등을 이용한 광고 진행시, 추천인 또는 보증인과 광고주 사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함.
  -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고용 된 상태에서 추천 등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표기예) 위 공연을 추천하면서 GC독십자웰빙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음

## 4. 범위반시 제재

### 1)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주체

- ☑ 거짓, 과장, 비방 광고내용을 직접 제작, 작성한 자
- ☑ 광고매체 등에 광고를 집행한 자
- ☑ 광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귀속된 자
- ☑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보고 광고주라고 인식하게 되는 자

#### 업무상 유의사항

- '표시'를 한 제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도 책임을 지게됨
-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한 경우라도 광고주도 책임을 질 수 있음
- 책임이 있는 경우 모두 제재를 받으며 당사자 간에 어느 일방이 표시 또는 광고 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관계 없이 제재를 받음
- 광고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무과실 책임 부담

### 2)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      |                                        |
|------|----------------------------------------|
| 시정조치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시 5억원 이하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     |        |
|-----|--------|
| 과태료 | 1억원 이하 |
|-----|--------|

## 8



# 제조물책임법

## 1. 제조물 책임의 요건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책임 (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 제1항)

리콜제도는 결함 제품의 수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물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다.

- 제조업자 (법 제2조 제3호)

-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
-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표시한 사람 또는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

- 결함이란?

|        |                                                                                               |
|--------|-----------------------------------------------------------------------------------------------|
| 제조상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설계상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표시상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어야 한다. (법 제3조 제1항)

## 2. 제조물 책임 인정시 책임

| 구분             | 내용                                                                                                                                                                                                                        |
|----------------|---------------------------------------------------------------------------------------------------------------------------------------------------------------------------------------------------------------------------|
| 배상책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법 제3조 제2항 전단)                                                                                     |
| 배상액 산정         |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법 제3조 제2항 후단) |
| 판매대여 등 공급자의 책임 | 판매대여 등 공급자의 책임 :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3. 결함 등의 추정

- 피해자가 다음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 위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 위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9



## 약사법

###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 1. 약사법 개요

- 약사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의약품과 관련된 업무(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유통 등)를 법적으로 체계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구분                      | 내용                                |
|-------------------------|-----------------------------------|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보장        |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
|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불법 유통 및 부정거래 방지.                  |
| 국민 보건 향상                | 약사의 역할과 약국 운영을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촉진. |
| 리베이트 및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지 |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                   |
| 약사 관련 규정 명확화            | 약사, 한약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법적 기준 마련.  |

#### 2.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 수입업자, 도매상)와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의약품 공급자의 금지 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등)는 의약품을 직접 소매할 수 없음(소매는 약국 및 허가받은 기관만 가능).
- 의약품을 불법적인 유통 경로(비허가 업체, 개인)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 단, 공익 목적(예: 국가 비상상황 등)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 가능.

**② 유통 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

- 위해 의약품(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 금지.
- 매점매석(의약품을 비정상적으로 사재기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금지.
- 약국 이름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 금지

**③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리베이트 금지)**

-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인,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은 예외.
- 약사·의료인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음(리베이트 수수 금지).

**④ 특수관계인의 불법 거래 제한**

-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간 특수관계(친족, 지배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
- 불법적인 내부 거래(우회 거래 포함) 방지를 위한 규정.

**3. GC녹십자웰빙과 약사법 적용 가능한 리스크****(1)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리스크**

- 제약사는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의 목적으로 의료인(의사, 약사), 의료기관, 약국 등에 금전·향응·편의 등을 제공할 수 없음.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은 가능.

**① CSO(판매 대행업체)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판매 대행업체)를 활용하여 의사에게 강의료·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처방 유도를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 실제로 국내외에서 CSO를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 존재.

**② 약사법상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를 통한 판촉 활동**

- GC녹십자웰빙이 의약품 영업 경험이 없는 판촉 대행업체를 활용하여 의약품 판촉을 시도할 경우 법 위반 가능.
-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판촉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홍보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4. 10. 18.>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 행위 유형      |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
|------------|-------------------------------------------------------------------------------------------------------------------------------------------------------------------------------------------------------------------------------------------------------------------------------------------------------------------------------------------------------------------------------------------------------------------------------------------------------------------------------------------------------------------------------------------|
| 견본품 제공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이하 이 표에서 "사업자"라 한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의약품 공급자 지위를 동시에 가진 자로 한정한다)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표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제공 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
| 학술대회 지원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비용</p> <p>가. 의학·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p> <p>나.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p> <p>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p> <p>라.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국외 학회를 포함한다), 학술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연구단체</p>                                                         |
| 임상시험 등의 지원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나목의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을 포함한다)과 적절한 연구비. 이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을 포함한다.</p> <p>가. 법 제3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말한다)</p> <p>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p>                                                                                        |
| 제품 설명회     | <p>가. 사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p> <p>나. 사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p> <p>비고: 제품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p> |

## 제9장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 행위 유형            |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
|------------------|------------------------------------------------------------------------------------------------------------------------------------------------------------------------------------------------------------------------------------------------------------------------------------------------------------------------------------------------------------------------------------------------------------|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p>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할인</p> <p>가.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p> <p>나.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p> <p>다.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p> <p>비고 1. "거래일"이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p> <p>2.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p> |
| 시판 후 조사          | <p>법 제32조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 이하의 사례비.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하되, 연구목적, 해외허가 또는 해외등록 등을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다.</p>                                                                     |
| 기타               | <p>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p>                                                                                                         |

# 10



## 의료법

제23조의 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 1. 의료법 개요

-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사, 약사, 병원 경영진 등)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2. 법 조항별 분석

#### (1)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제1항)

##### ① 금지 행위

-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를 위해 금전, 물품, 향응, 편익 등을 받을 수 없음.

##### ② 예외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은 허용됨(보건복지부령 범위 내에서 가능).

- ③ GC녹십자웰빙이 자사 제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 또는 약국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할 경우 법 위반 가능성 있음.

## (2)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제2항)

### ① 금지 행위

-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음.

### ② 예외

- 견본품 제공 등 합법적 마케팅 활동은 가능(보건복지부령 기준 준수).

### ③ 처방전 유인 및 약국과의 부적절한 거래, GC녹십자웰빙이 특정 약국과 협력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경우 법 위반 가능성 있음.<신설 2024. 1. 23.>

## 11



Click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법률 제20712호, 2025.01.21 시행)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1. 법률 적용 대상

### (1)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2)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가지)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 2. 부정청탁의 금지

### (1)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14가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                                                        |                                                         |
|--------------------------------------------------------|---------------------------------------------------------|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면허 등 처리 직무               |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 <input type="checkbox"/>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직무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 <input type="checkbox"/>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input type="checkbox"/>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탈락 직무 | <input type="checkbox"/> 병역 관련 직무                       |
| <input type="checkbox"/> 각종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 직무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관련 직무      |
| <input type="checkbox"/>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input type="checkbox"/> 행정지도 단속·감사 조사 관련 직무            |
| <input type="checkbox"/>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 관련 직무            | <input type="checkbox"/> 수사 재판·심판 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

### (2) 위반시 제재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의 유형과 제재

| 구성요건           |                              | 제재수준                     |
|----------------|------------------------------|--------------------------|
| 행위주체           | 유형                           |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제재 없음                    |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자            | 일반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공직자 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공직자 등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 (1)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9조)

##### ①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 규정

##### ②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됨.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제재를 받음.

##### ③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5만원까지 허용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                                                              |
|------|--------------------------------------------------------------|
| 음식물  | 3만원 이하 (식음료, 다과, 주류 등 포함)                                    |
| 선물   | 5만원 이하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 경조사비 | 10만원 이하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 가액 합산) |

#### (2)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청탁금지법 제10조)

-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됨.

## ②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위반의 유형과 제재

| 제재 대상                                                                                                                                                                                                                                                               | 제재 수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관련 여부 및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li> <li>- 금품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li> </ul> </li> </ul>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br>(물수·추징 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li> <li>-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li> </ul> </li> </ul>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는 행위</li> </ul>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4. 양벌규정(청탁금지법 제24조)

-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회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 12

## 공정경쟁규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1.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 1987년 4월 1일 공정거래조정위원회(당시 경제기획원)은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 및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하여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공정거래법[시행 1987. 4. 1.] [법률 제387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15조 제3항

제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1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한편, 복지부는 1992년 6월 30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하여 경품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 1992. 7. 1.] [보건사회부령 제891호, 1992. 6. 30., 전부개정] 하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1992. 7. 1.] [보건사회부령 제891호, 1992. 6. 30., 전부개정]**

제48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 ⑨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⑩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상위의 공정거래법 등을 근거로 1994년 6월 7일 총 10조로 구성된 "보험의약품용 의약품 거래와 관련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경정42500-653)을 받아 동년 12월 27일 제정하였다.
- 이후, 공정경쟁규약은 2001년 1차 개정[시행 2001.12.18./경축 42500-891]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5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2. 공정경쟁규약의 의의

### (1)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9조)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들 간의 자율준수규약의 형태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 되어있고,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실상 관련 법 위반 등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계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약 제 개정 승인 연혁

|        |                                           |
|--------|-------------------------------------------|
| 제 정    |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경쟁정책과 42500-653, 1994.12.27.) |
| 제1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경쟁촉진과 42500-891, 2001.12.18)  |
| 제2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제조업감시과-343, 2009.12.22.)      |
| 제3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제조업감시과-601, 2010.12.17.)      |
| 제4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지식산업감시과-374, 2017.9.28.)      |

- 이처럼 공정경쟁규약은 법 위반 등의 판단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사법당국도 역시 실무상 위법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검토할 때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검토 및 고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수의 판례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 다음의 판례는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승인하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법리를 이어 나가고 있는 일례이다.

## 대법원 2009두9543판결(2010.11.25. 선고)

## 판결주문(일부)

'사업자의 판매 촉진활동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다성 등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 있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승인한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행위 규범(BEST PRACTICE)으로서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이 사실상 강제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특징은 비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015년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된 안호준 변호사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영국, 일본, 독일 등 33개의 주요 국가에서도 자율규약의 적용이 강제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공정경쟁규약을 "부당한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공정취인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 (2) 법의 보완성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1994년 제정된 이후, 총 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공정경쟁규약의 제·개정 과정은 주로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영향을 받아 왔다.
- 1994년 공정경쟁규약은 1987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 1987. 4. 1.][법률 제3875호, 1986. 12. 31., 일부개정] 및 1992년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1992. 7. 1.][보건사회부령 제891호, 1992. 6. 30., 전부개정] 등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2001년에 이루어진 제1차 개정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하여 의료기관 등에 제공되는 금품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되었다.
- 복지부는 2008년 12월 14일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08. 12. 14.][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 2008. 12. 1., 일부개정] 제62조 제1항 제5호를 개정 시행하여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할 수 없는 범위를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에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확히 하였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1월과 2009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국내외 17개 주요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시정 명령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 2차 개정은 2008년 12월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규약의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경쟁규약을 2010년 12월에 3차개정하였으며, 제3차 개정의 가장 큰 배경은 2010년 11월에 시행된 쌍벌제 도입이다.

## 제12장

공정경쟁규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보건복지부는 2010년 11월 28일 약사법[시행 2010.11.28.] [법률 제10324호, 2010.5.27., 일부개정], 의료법[시행 2010.11.28.] [법률 제10325호, 2010.5.27., 일부개정], 의료기기법[시행 2010. 11. 28.] [법률 제10326호, 2010. 5. 27., 일부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쌍벌제를 시행하였다.
-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처방 등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에서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어, 「형법」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 약사법상 쌍벌제 도입 이유

##### 약사법 개정이유

-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약국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법에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법」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아울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 의료법상 쌍벌제 도입 이유

##### 의료법 개정이유

- 현재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법에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제12장

공정경쟁규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아울러,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 받는 것을 근절하려는 것이다.

- 제약바이오협회는 쌍벌제 관련법(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규약의 허용 범위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3차 개정을 진행하였다.
- 제4차 개정의 움직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감사원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기여"를 목표로 감사를 진행하여 2014년 9월 4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강의료/자문료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 6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채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 실태 : 감사원, 2014.9)

##### [조치할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 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사 등으로부터 강의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0,000천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 627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 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통보)
- ②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 제약바이오협회 등 규약 3개 단체와 "자율규제 개선TF"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제약바이오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제3차 개정 때 삭제되었던 강연료/자문료 관련 조항을 기본으로 조문을 보완하여 공정경쟁규약 제4차 개정에 반영하였다.
- 이처럼 공정경쟁규약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강연 및 자문조항처럼 관련 법령 등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 Appendix

01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02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규정

03 CP규율 기준

GC Wellbeing

##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공정경쟁규약 기준)

## 1. 일반사항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여부 (O/X) |
|--------------------|----------------------------|-------------|
| CP 교육 실시 여부        |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             |
|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수행     | CP 담당자 및 운영위원회 활동 점검       |             |
| 내부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준수 | CP 위반사항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존재 여부 |             |

## 2. 영업 및 마케팅 활동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여부 (O/X) |
|--------------|-------------------------------------------|-------------|
| 제품설명회 사전 승인  | CP 기준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쳤는가?                 |             |
| 제품설명회 비용 증빙  | 비용 집행 후 증빙자료(영수증, 참가자 명단 등) 제출 여부         |             |
| 견본품 제공 기준 준수 | 의약품의 제형 형태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포장단위로 제공 하였는지 여부 |             |
| 견본품 제공 준수 여부 | 허가된 최소포장단위로 제공, 'Sample' 표기 여부            |             |

## 3. 학술대회 및 기부행위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여부 (O/X) |
|----------------|-------------------------------------|-------------|
| 학술대회 지원 사전 승인  | 학술대회 개최 전 협회 신고 및 사전 승인 여부          |             |
|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제한 |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지원 한도 준수 (교통비, 숙박비, 식대) |             |
| 기부행위 사전 승인 여부  | 기부금 제공 시 협회 심의 및 사전 신고 여부           |             |
| 기부금 사용 투명성 확보  | 기부금 집행 후 협회에 사후보고서 제출 여부            |             |

## 4. 시장조사 및 연구 활동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여부 (O/X) |
|--------------------|-------------------------------|-------------|
| 시장조사 준수 여부         | 보건의료전문가 대상 판촉활동 금지 준수 여부      |             |
| 시장조사 답례품 한도 준수     | 10만 원 이하 답례품 또는 식음료 제공 여부     |             |
| 시판 후 조사(PMS) 기준 준수 | 의약품 처방 유도 목적 PMS 금지 여부        |             |
| 연구 지원 비용 집행        | 계약서에 따른 연구비 지급, 연구 완료 후 보고 여부 |             |

## 5. 광고 및 전시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여부 (O/X) |
|--------------|-------------------------------------------------------|-------------|
| 광고비 지출 기준 준수 | 학회·의료기관 광고 시 정상 거래 기준 준수 여부                           |             |
| 부스비 지출 한도 준수 | 학회당 200만 원(최대 300만 원)<br>요양기관 주최 시 50~100만 원 한도 준수 여부 |             |
| 전시·광고 비용 보고  | 분기별 협회 신고 여부                                          |             |

## 6. 내부 통제 및 제재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여부 (O/X) |
|------------------|-----------------------------------|-------------|
| CP 위반 모니터링 시행    |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위반 사례 점검 여부          |             |
|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      |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여부 및 활용성 점검          |             |
| CP 위반 시 제재 기준 적용 | 위반 시 WB-C05_CP 규율 기준에 따른 징계 적용 여부 |             |
| 포상 제도 운영 여부      | CP 우수 이행자 포상 여부                   |             |

# 공정거래자유티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주식회사 녹색자유티빙(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 활동에 적용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율 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 법규를 말한다.
3. “경쟁 당국”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 준수 프로그램”은 자율 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 요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 준수 관리자”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율 준수 담당자”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 준수 관리자를 보좌하고 부서별 자율 준수 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자를 말하며, CP 관리팀 소속 직원이 이에 해당한다.
7. “부서별 자율 준수 담당자”는 리스크 존재를 확인한 부서 소속의 자율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사전 협의”라 함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 준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10. “모니터링”이라 함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재 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자율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2. “문서 관리”라 함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서에 대하여 보관, 보존,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서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인센티브”라 함은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고객 및 관계사, 협력사의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에게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등

####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① 회사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율 준수 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자율 준수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관리팀장이 새로운 자율 준수 관리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① 자율 준수 관리자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2. 자율 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공정거래법 및 자율 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4. 경쟁 당국 및 법 관련 정부 기관과 커뮤니케이션
  5. 자율 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자율 준수 활동 및 사안의 이사회 보고
  7. 자율 준수 운영 위원회 운영
  8.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 조치 강구
  9.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징계) 요구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자율 준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를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공정거래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4.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5.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6.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위반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있는 권한
  7. 자율준수운영위원회 운영 권한
  8.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
  2. 자율준수 활동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의무

## 제7조(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

①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업무 보좌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실무 수행
3. 공정거래법 정보 수집 및 제공
4.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가이드라인)의 작성,운영,관리
5. 공정거래법 및 자율준수제도 관련 직원 교육 및 상담
6. 공정거래법 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7. 자율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
8. 내부 제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9. 자율준수 운영 관련 문서체계 구축 및 관리
10.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하여 사전 심사하며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11. 년 1회 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및 평가 시행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제①항의 이행결과를 수시로 자율준수관리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부서별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내부 규정의 정비 및 일상 업무에 관한 사전 심사 이행여부 점검
2. 부서 업무수행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여부 점검
3. 공정거래법 및 자율준수제도관련 부서 직원 교육 및 상담
4. 공정거래 준수 위반사항 발견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에게 보고
5. 제1호 내지 제4호 관련 내용의 기록, 유지

④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는 제③항의 이행결과를 자율준수담당자에 수시로 제출하 여야 한다.

## 제8조 (전담부서의 지정)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설치하며, 자율준수사무국의업무는 CP관리팀이 수행한다.

## 제2절 자율준수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9조 (자율준수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

①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회사의 자율준수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운영위원회를 둔다. 자율준수운영위원회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위촉하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자율준수 관리자
2. 위원(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외): 본부 본부장
3. 간사(자율준수담당자 외):운영기획 팀장

### 제10조 (자율준수운영위원회 역할)

① 자율준수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개정
  3. 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표 개발 및 효과성 평가
  4.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및 포상금산정 심의
  5. CP 우수 조직 및 직원 포상 건의
  6.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징계)요구
  7. 협력업체 자율준수 실천 환경조성 및 관리
  8. 기타 자율준수 문화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관련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관련사안의 적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통보를 지시한다.
- ④ 자율준수담당자는 협의내용과 그 검토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 (자율준수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소집하며 일시, 장소, 의제 등을 회의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사안에 대한확실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게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2조 (제척)

제재조치의 사안에 대하여위반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3절 임직원

### 제13조(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부서별 법령 준 수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나 기준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자율준수편람, 관련 사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사무국에보고하여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공정거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 ① 해당 부서는 사업추진, 동종업계 관계자의 만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승인 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격 심사기준에 따라 자율준수담당자 및 자율준수관리자 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 또는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그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또는 승인에 앞서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은 후 자율준수관리자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전협의를 서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경우 조사확인도 병 행 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담당자는 공정거래 주요사항에 대한 제①항의 사전협의자료를 기록·관리한다.

##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 제15조(선언 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법을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 제16조(선언방법)

-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② 제①항의 문서는 필요시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회사 외부의이해관계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지한다.

### 제2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 제17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신속하게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절 모니터링 제도

#### 제18조(모니터링의 책임과 권한)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팀 구성
  2.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점검 및 조사
  3. 모니터링 계획서 및 보고서 승인
  4.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그 결과의 이사회 보고
  5.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 위반업무에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② 자율준수담당자의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시행
  2.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팀 구성
  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4. 모니터링 경과 시정조치사항의 시행여부 확인
- ③ 수검부서의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 활동 협조

2.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3.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자율준수담당자에게 보고

## 제19조(모니터링의 구성)

① 모니터링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감독: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한다.
2. 감사: 회사의 업무사항을조사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한다.
3. 보고: 임직원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제20조(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연간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자율준수담당자는 매년 초 연간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검토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 ② 모니터링팀 구성: 모니터링팀은 원칙적으로 CP관리부서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업무에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켜 모니터링 실시 또는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1. 모니터링 실시

가. 모니터링 실시 전 수검부서에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 범위와 목적
- 모니터링 일정을 포함한 세부계획 소개
- 기타 불분명한 내용 확인

나. 모니터링은 계획서와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여 실시하며 점검표상에 없는 것이라도 자율준수 이행의 확인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 모니터링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실시하며각각의 위법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부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모니터링이 끝나면 법 위반 부서에 법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위한 조언을 한다.

## 제21조(모니터링 방법)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준수 여부를 반기 별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 제22조(모니터링 결과 보고)

-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모니터링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모니터링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자료관리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서 정한다.

## 제23조(내부제보 시스템)

① 내부제보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3.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4.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5.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6. 회사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7. 기타 준법 및 청렴·윤리적 행동에 어긋나는 행위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 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 도록내부제보시스템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담당자는 내부 제보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절 교육프로그램

### 제24조(교육의 책임과 권한)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정거래법 위주로 교육하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담당자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행 전 과정별 계획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교육과정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3. 교육에 대하여 교육기록서를작성,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 제25조(교육의 절차)

① 자율준수 관련교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1. 교육 계획 수립: 교육계획은과정명, 목적, 일정, 시간, 대상자, 예상소요비용 등을 작성한다.
2. 교육대상자 통보: 자율준수담당자는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3.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된대상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 상자를 확정한다.
4. 교육진행: 교육진행은 자율준수담당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부서에서 주 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교육결과보고서: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한다.
6. 교육문서 보관: 교육자료, 출석점검표, 교육결과보고서 등 교육관련 문서는 자율준수담당자의 책임하에 이 를보관 및 관리한다.

## 제26조(교육의 실시)

-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특히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일정대로 진행하며, 교육결과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7조(교육의 내용)

- ①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 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들로 한다.

## 제5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제28조(제재의 원칙)

- ①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 제재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제재에 대하여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9조(제재의 절차)

- ①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내용을 자율준수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자율준수운영위원회는 위반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통보한다.

## 제6절 문서관리

### 제30조(문서관리 기본원칙)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로 기록되어야 한다.

### 제31조(관리대상 문서)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명문서

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 입증문서
4.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5.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포상 관련 문서
6. 자율준수 교육결과보고서
7.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자료 등

## 제7절 기타

### 제32조(제정·개정)

- ① 이 규정은 자율준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개정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운영위원회는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사규 및 매뉴얼을 소관하는 부서는 그 사규 및 매뉴얼의 제정또는 개정 시 이 규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자율 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 제33조(인센티브 등)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

1. 내부제보자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직원
3.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부서

### 제34조(운영상황 공시)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공시하여야한다.

### 제35조(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그 결과 프로그램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36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사무국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7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CP 규율 기준 [제재,포상]

## -공정거래법 위반시 제재조치 및 우수자 인센티브-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GC녹십자월빙 (이하 “회사”라 함)의 CP운영 규정에 의거,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제 규정 및 사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회사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재심의)

1. 제재는 Compliance관리 부서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자율준수관리자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는 Compliance 관리 부서에서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특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CP위반자에 대한 제재 여부를 별표1에 의거하여 심의.의결한다.
3.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안건은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가 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재에 관한 결정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 제2장 제재

#### 제3조 (제재의 종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사규(징계규정)에 의한다. 단, 위원회는 심의결과 징계에는 이르지 않지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 명의의 주의를 줄 수 있다.

1. 주의: 주의라 함은 징계 없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함을 말한다.
2. 징계: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감금, 정직, 강등, 해고를 말한다.

#### 제4조 (제척 및 기피)

위원 중 제재 대상 또는 해당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건의 심의에 관계하지 못한다.

#### 제5조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Compliance관리 부서에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인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 (제재사유와 심의기준)

제제사유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 (징계요구)

제2조 제5항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재결의가 있는 후 7일 이내에 징계요구서를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 하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징계절과 통보)

인사담당 부서장은 징계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제3장 포상

## 제9조 (규범준수 장려 포상)

1. 자율준수 관리자는 Compliance 프로그램 전파 및 확산에 의하여 회사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을 정착시킨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장려 포상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준수여부 점검결과가 우수한 자
  - 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3) 공정거래 교육이수 우수자
  -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제안자
  - 5)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 관련. 퀴즈 응모자 혹은 시험 응시 우수자
  - 6) 기타 자율 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자
2. 자율준수 관리자는 Compliance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